##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49

발의연월일: 2021. 7. 1.

발 의 자:오영훈·강득구·강준현

박광온 · 서영교 · 송재호

양이원영・양정숙・용혜인

이병훈 • 이성만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나 부시장·부지사 등을 임명하는 경우 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 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실시 근거가 없어 지방의 회의 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나 부시장·부지사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8조의2(인사청문회) ①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말한다)는 시·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연다.
  -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 지사의 후보자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임명하는 행정시장의 후보자
  -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후 보자
  - ② 시·도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회의 인사청 문경과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법률
<u> &lt;신 설&gt;</u>	제78조의2(인사청문회) ① 시·도
	의회의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
	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회의를 말한다)는 시·도지사
	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
	우 인사청문회를 연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
	<u>장·부지사의 후보자</u>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임
	명하는 행정시장의 후보자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
	②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제1항
	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경과를 시·도지사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 한다.